

# 산림청, 산림훼손 적극 방지키로

- 백두대간보전 등을 위한 “산림피해 확대방지대책” 수립·시행 -

## 요 약

- ◇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제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 스키장·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 ◇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 현행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 위험이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 ◇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식도·모노레일·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 1. 백두대간 보전

- 산림청에서는 ①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 온 백두대간의 실체를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립, 제도화 ② 국토이용 계획 협의기준의 강화 ③ 천연보호림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의 개념정립 및 효과적 보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강구

-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경 주되어 왔으나 백두대간에 대한 명확한 공식적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 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 렴, 2000년 중으로 백두대간 마루금의 설정방법 등 백두대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그 보전방안을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금지 등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 강화

- 골프장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산림청에서는 국토이용변경협의시 “협의 기준”의 개 정을 추진, 금년내로 마루금 침범 금지등 보 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백두대간 인근 핵심지역에 천연 보호림 지정을 확대하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 ※ 현행 골프장 협의기준

- 조립성공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20% 이내 인 경우에 한함
- 국유림의 경우 요존국유림은 골프장 부지 로 편입금지되며, 불요존국유림은 전체 부지면적의 20% 이내여야 함
- 임업진흥권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게재지 또는 진입로에 한함

## 2. 골프장·공원묘지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 산림청에서는 골프장·공원묘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 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 하여 ①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를 상향 ②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 ③ 공원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 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도 지사로 상향조정

- 현행 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가 시장·군수로서 산림형질 변경허가권자와 동일하 기 때문에 경관지역에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산림형질 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



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형질변경 도중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된 경우에는 중간복구토목 명령하는 등 토사 유출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미착공 또는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승인취소·사업정지 요청**

- 산림청은 금년 6월중에 공사중단된 골프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1년이상 사업중단되어 방치되거나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이 있는 골프장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강력 하게 요청하도록 하고, 건설중인 골프장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신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경사지·경관지역에는  
공원묘지 설치금지**

- 공원묘지의 경우 지구지정후 장기간이 경과된 지역은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과 동시에, 금년중에 묘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여 급경사지·경관지역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보전임지는 축소하고, 경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 지구지정후 장기간이 경과되면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집중 호우시 '98년의 경우와 같



- 이 급경사지가 무너지거나 묘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납골당 확대등 장묘제도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여 산림 전용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 3. 임도 · 송전탑 진입로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물량위주 임도정책을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정책”으로 전환

- 지금까지 “물량” 확대에 치중하여 부족한 예 산 단비로 많은 임도를 시공함으로써 장마철 폭우시 임도유실,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임도는 파종·녹화를 소홀히 하여 원거리에서 절·성토면이 그대로 보이는 등 경관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 ※ '98년말 현재 임도시설거리 : 13,515km (년 평균 시설거리 : 460km)
- 21세기 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정책”으로 전환, 사업비를 2배까지 인상하여 품질을 우선하는 건설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공공감리제도·기본 조사설계·토공단비가이드라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튼튼하고 경관과 조화되는 임도가 시공되도록 지난 1월에 이미 지침을 제정·시행한 데 이어
-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대대

적인 구조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시공되는 임도는 계획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 전국 지방산림관리청 임도관계관 및 임도설계팀(71명)이 '99. 6. 16 대관령 시범임도현장에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임

삭도 · 모노레일 · 헬기운반에 의한 송전탑 건설 대폭 확대 추진

- 지금까지는 송전탑과 연결을 위하여 산정부·능선부 위주로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피해방지·경관유지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모노레일·헬기 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송전탑 진입로 설치를 위한 대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 공사중인 진입로 또는 공사완료된 진입로 중에서 피해방지·경관유지를 위한 보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
-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노선 공사중지, 대부·사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중지하여 송전탑 진입로로 인한 산림훼손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 건설중인 765kv 송전탑 규모 : 철탑수 669기, 연장거리 340km